



앨버커키 시

환경보건부 소비자 건강 보호과

## 임시 식품 서비스 시설 허가 신청

1 Civic Plaza NW, 3rd Floor, Room 3023, Albuquerque,  
NM 87102 (505)768-2738

작성을 완료하지 않은 신청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

\$25 수수료를 납부할 때까지 허가는 유효하지 않습니다

**신청서는 행사 일주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.**

**\$25** 허가 수수료는 임시 식품 서비스 허가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. 업체는 허가 수수료를 납부하고 허가를 취득하기 전에 영업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. 임시 식품 서비스 허가는 양도할 수 없으며 단일 장소에서만 유효합니다. 시에서 발급한 허가는 모든 마켓에서 영업할 때 **필요하지만** 특정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**아닙니다**. 특정 행사 참여는 행사 코디네이터 재량에 따릅니다.

환경보건부 소비자 건강 보호과("CHPD")에 이메일([consumerhealth@cabq.gov](mailto:consumerhealth@cabq.gov))로 신청서를 보내거나 사무실에서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. 수수료는 청구서를 받은 후 온라인으로 납부하거나 수표, 우편환 또는 현금(정확한 금액)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가정조리음식에 관한 법(Homemade Food Act)의 적용을 받는 판매 업체는 이 허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(가정조리음식에 관한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, 여기서 멈추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마십시오. 해당 법률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(<https://www.cabq.gov/environmentalhealth/food-safety>)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)

### 신청자 정보

소유주/운영자 이름:	
시설 이름:	
영구 주소:	시/주/우편번호:
행사 이름:	행사 주최자:
<i>(재배자 마켓에서 판매하는 경우, 이 신청서는 마켓 관리자/주최자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.)</i>	
행사 시작일:	행사 종료일:
<i>(임시 식품 서비스 시설 허가는 고정된 장소 한 군데에서 14일 동안 유효합니다. 이외의 경우,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.)</i>	
행사 주소:	
신청자 전화번호:	신청자 이메일 주소:
비상 연락처:	

### 담당자

(신청자와 다른 경우)

이 사람은 마켓 현장에 상주하며 식품 안전을 책임집니다.

성명:	
주소:	시/주/우편번호:
전화번호:	이메일 주소:
비상 연락처:	



식품 품목	식품 준비 위치	조리 방법 (예: 튀김, 그릴에 구움, 오븐에 구움, 재가열)	식품 온도 및 디스플레이 방법

### 변경 요청

본인은 식품 위생 조례(Food Sanitation Ordinance) § 9-6-1-1 et. seq 요건에 대한 변경을 요청합니다.

**변경 요청 사유:**

이 요건은 본인의 사업체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합니다.

이 요건은 본인의 사업체에 과도한 어려움을 부과합니다.

**변경 요청 증거:** (요건이 귀하의 사업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나 어려움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초래하는 이유를 설명하십시오. 이 설명은 소비자 건강 보호과가 귀하의 요청을 평가하는 데 필요합니다. 이 변경 박스에 체크하고 이 섹션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, 소비자 건강 보호과는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.)

**아래 서명함으로써, 본인은 다음을 확인하고 증명합니다.:**

- 신청서상 포함된 모든 정보는 정확합니다.
- 제공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CHPD에 고지합니다.
- 앨버커키 시 임시 식품 서비스 시설 관련 식품 위생 조례 §§ 9-6-1-1 et. seq. ROA 1994의 모든 요건을 준수합니다.
- 본인은 CHPD가 공중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요건을 부과할 수 있고, §§ 9-6-1-4(A)(1) ROA 1994에 명시된 대로 잠재적으로 위험한 식품의 일부 또는 전체 판매나 유통을 금지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.
- 본인은 앨버커키 시 식품위생조례 § 9-6-1-4가 본 허가에 따라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정해진 장소로 운영을 제한한다는 걸 이해합니다.
- 본인은 변경을 취득하기 위해 앨버커키 시 식품위생조례 § 9-6-1-16에서 정한 대로 변경을 요청해야 함을 이해합니다.
- 본인은 직접제조식품법 제25조12항1호(NMSA 1978)를 정독하고 이해했습니다. 본인은 여기서 정의한 "직접제조식품[들]"을 준비하거나 판매하지 않으며, 또한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.
- §§ 9-6-1-1 et seq ROA 1994에 정의된 모든 "잠재적으로 위험한 식품"은 동법 동조항의 요건을 준수하는 시설에서 준비합니다. 또한,
- 본인은 CHPD가 §§9-6-1-1 et seq. ROA 1994 등을 시행할 취지로 상기에 언급된 식품 시설 및 관련 기록을 대상으로 한 접근을 허용할 권리가 있으며 허용합니다.

신청자 성명(정자체): \_\_\_\_\_

신청자 서명: \_\_\_\_\_

날짜: \_\_\_\_\_

보건 당국 서명: \_\_\_\_\_

공무용 한정		
<input type="checkbox"/> 표시# _____	<input type="checkbox"/> 온라인 결제	<input type="checkbox"/> 현금
납부 금액: \$ _____		날짜: _____
환경보건부(EHD) 직원: _____		